

2009. 02. 25(수)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안번호 제2009 - 1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2. 1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2. 17.

2.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더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어려운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16조제3항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13,000천원)

-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 9,000천원
- 재향군인회 회원 전적지 순례 : 4,000천원

다. 입법예고(2008. 11. 24 ~ 12.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거창군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보훈의식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준사관)·부사관(부사관) 및 병(병)

제6조 (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직장지회)·연합분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 (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09 - 2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2.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2. 17.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7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116조 ⇒ 「지방재정법」 제95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련 조문(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 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 등 ⇒ 군수(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 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 제3항, 제8조제2항)
- 의하여(한) ⇒ 따라(른) (안 제1조,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3항)
- ~이라 함은 ⇒ ~이란(안 제2조)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2조)
- 이외 ⇒ 외(안 제2조제2호)
- 당해 ⇒ 해당(안 제6조, 제7조제1항 · 제2항)
- 기타 ⇒ 그 밖에(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 중복되어 표현이 어색한 “이름”을 삭제(안 제6조, 제8조제2항)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생략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9 - 3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2.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2. 17.

2. 제안이유

-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 수승대관광지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 나. 목적 조항에서 삭제한 “관광지” 및 “관람료등”의 약칭을 사용함.
- 관광지 →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안 제2조)
 - 관람료등 →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 (안 제8조제1항)

다. 관람료의 징수시기와 관련한 용어의 뜻을 신설함.

-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안 제4조제6호 신설)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안 제4조제7호 신설)

라. 관람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

- 관람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제4조제6호에 따른 성수기에만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안 제6조제1항)

마. 관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와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제11조제2항)

-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법」)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른)
- ~의(에) 정하는 → ~로(에서) 정하는
- ~에 의한다 → ~에 따른다
- ~의 정의는 → ~의 뜻은, ~(이)라 함은 → ~(이)란

- 아니한다 → 않는다
-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 그 밖에(의), 이외 → 외
- 관광지내 → 관광지 안
- ~할 때에는 → ~하면
- 붙일 → 부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1. 15. ~ 2009. 2. 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군의회의 군정질문(07. 3. 20)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승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이용료(주차장, 썰매장 등)는 계속 징수하되 관람료는 세입결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피서 성수기인 7 ~ 8월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기간에만 관람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관람료 징수실적(6년간)

(단위 :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관람료	51,950	49,351	58,034	61,881	60,990	68,188

- 피서 성수기(7~8월)에 연간 관람료 수입의 75~79% 징수

-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 수송대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피서 성수기인 7 ~ 8월에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9 - 6호>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02. 1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9. 02. 17.

2.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76호, 2007. 12. 14)됨에 따라 거창군의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평생학습조례”에서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추진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나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평생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평생교육센터의 수행 사업과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및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두는 거창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조례 등 준용 규정을 둠(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 1010추진단과 의견 수렴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거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은 종전의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12명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